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시행세칙



## 한국항공대학교

## 개정 기록표

| 번호 | 개정일자 | 개정자 (서명) | 번호 | 개정일자 | 개정자 (서명) |
|----|------|----------|----|------|----------|
| 1  |      |          | 16 |      |          |
| 2  |      |          | 17 |      |          |
| 3  |      |          | 18 |      |          |
| 4  |      |          | 19 |      |          |
| 5  |      |          | 20 |      |          |
| 6  |      |          | 21 |      |          |
| 7  |      |          | 22 |      |          |
| 8  |      |          | 23 |      |          |
| 9  |      |          | 24 |      |          |
| 10 |      |          | 25 |      |          |
| 11 |      |          | 26 |      |          |
| 12 |      |          | 27 |      |          |
| 13 |      |          | 28 |      |          |
| 14 |      |          | 29 |      |          |
| 15 |      |          | 30 |      |          |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의미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교 주도형: 학교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실습기관 주도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및 실습지원비 등의 여건·지원 사항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주도형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계획서 구비)** ①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약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제5조(협약)** ① 현장실습 협약은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 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체결한다.

② 실습기관 및 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한다.

③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은 학기기간(시작일과 종료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협약서에 기간을 명시한 경우 학기기간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출석관리)** ①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제9조제4항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

②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실습기관의 출석관리 사항을 점검한다.

③ 실제 출석일로 출석을 관리하되, 1주 기준 1일의 휴일은 제외하고, 제9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칙 시행세칙」의 유고결석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제8조(평가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에서 지정한 서식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평가표 및 출석부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제출사항에 대한 이상여부에 대한 검토 후 실습기관과의 해당 현장실습을 마친다.

③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종료 시점에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청취하여 현장실습의 선순환 운영이 되도록 한다.

**제9조(학생보호)** 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 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한다.
- ⑥ 현장실습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 및 제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 ⑦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⑧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10조(운영기간 및 시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 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 자리 올림 값)

④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⑤ 연장·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11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

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학생안전 및 보호조치)** ① 현장실습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복교에 따른 중단 시 학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대체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대체교과목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한다.

1. 현장실습 교과목은 수강취소를 하고 대체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다.
2. 대체 교과목은 기 실시한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부여하며, 이 경우 재택실습 기간도 실습기간에 포함한다.

| 구 분      | 실습 기간   | 부여 학점 |
|----------|---------|-------|
| 학기제 현장실습 | 5분의2 이상 | 6학점   |
|          | 5분의3 이상 | 9학점   |
|          | 5분의4 이상 | 15학점  |
| 계절제 현장실습 | 5분의4 미만 | -     |
|          | 5분의4 이상 | 3학점   |

- ③ 국가재난 등 상황에 따라 휴학을 하는 경우 학칙 제40조에 의한 휴학기간과는 별도로 한다.

**제14조(국가재난 등에 따른 복교 시 등록금 등 반환)** ① 계절제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대체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 ② 학기제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한다.
- ③ 대체 교과목을 신청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동일학기에 현장실습 교과목 이외의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한 경우 부여학점에 포함하며, 대체교과목을 포기하고 추가과목만 이수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여 학점         | 장학 금액               |
|---------------|---------------------|
| 6학점까지         |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10학점부터 11학점까지 |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 12학점 이상       | 미지급                 |

부 칙

-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